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
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
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의 명확성 제고와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
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조문 신설

-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(안 제7조의2), 상인회의 등록 취소(안 제17조의 2)
-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의 근거 마련 (안 제22조의2)

나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문 신설(안 제23조의 2)

-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1회로 정함
-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 5년
-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 조건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(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전통시장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, 중구청(예관동), 문의전화: 3396-5061, FAX: 3396-8679, 메일: chsy523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전통시장의 인정 취소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.

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상인회의 등록 취소)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.

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.

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정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전통시장의 인정 취소) <u><신 설></u>	<p><u>제7조의2(전통시장의 인정 취소)</u>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.</p>
제17조의2(상인회의 등록 취소) <u><신 설></u>	<p><u>제17조의2(상인회의 등록 취소)</u>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.</p>
제22조의2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<u><신 설></u>	<p><u>제22조의2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</u>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정한다.</p> <p>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.</p>